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5. 12. .
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미시 자연휴양림의 입장제한과,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
안에 대하여, 선량한 입장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 피해를
예방하기 위해 제9조(입장제한)과 제11조(행위제한)을 현행대로
유지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9조(입장제한)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한다.
- 안 제11조(행위제한)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한다.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(입장제한)을 현행대로 존치한다.

안 제11조(행위제한)을 현행대로 존치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, 기타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	제3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 -. 1. ~ 3. (현행과 같음)	제3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
제9조(입장제한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	<삭 제>	제9조(입장제한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

할 수 있다.

1. 감염병 환자
2. 타인에게 위협을
주거나 또는 방해
가 되는 물품을 소
지한 자
3. 물품 등의 판매를
목적으로 입장하는
자
4. 공공시설을 해치
거나 타인의 방해
가 된다고 인정된
자
5. 야생동·식물 등
을 무단 채집할 목
적으로 입장하는
자
6. 애완동물을 데리
고 입장하는 사람

제11조(행위제한) 휴양
림 내에서 다음 각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행위를 하여서
는 아니되며 행위자
에 대하여는 퇴장을
명할 수 있다. 이 경
우 시설사용료는 반
환하지 아니한다.

<삭 제>

할 수 있다.

1. 감염병 환자
2. 타인에게 위협을
주거나 또는 방해
가 되는 물품을 소
지한 자
3. 물품 등의 판매를
목적으로 입장하는
자
4. 공공시설을 해치
거나 타인의 방해
가 된다고 인정된
자
5. 야생동·식물 등
을 무단 채집할 목
적으로 입장하는
자
6. 애완동물을 데리
고 입장하는 사람

제11조(행위제한) 휴양
림 내에서 다음 각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행위를 하여서
는 아니되며 행위자
에 대하여는 퇴장을
명할 수 있다. 이 경
우 시설사용료는 반
환하지 아니한다.

1. 고성방가나 방송
시설을 이용하여
다른 이용객에게
방해를 주는 행위
2. 술에 취하여 다른
이용객에게 불편을
주는 행위
3. 다른 이용객에게
혐오감 또는 피해
를 주는 행위
4. 각종 행상 행위
5. 동·식물을 채집
하거나 각종 시설
물을 오손, 파괴,
이전시키는 행위
6. 지정 장소 이외에
서의 취사행위 등
산에 불을 놓는 행
위
7. 산불예방기간(11
월 ~ 이듬해 5월까
지)에 야외에서 하
는 취사행위

1. 고성방가나 방송
시설을 이용하여
다른 이용객에게
방해를 주는 행위
2. 술에 취하여 다른
이용객에게 불편을
주는 행위
3. 다른 이용객에게
혐오감 또는 피해
를 주는 행위
4. 각종 행상 행위
5. 동·식물을 채집
하거나 각종 시설
물을 오손, 파괴,
이전시키는 행위
6. 지정 장소 이외에
서의 취사행위 등
산에 불을 놓는 행
위
7. 산불예방기간(11
월 ~ 이듬해 5월까
지)에 야외에서 하
는 취사행위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용어의 정의)”를 “(정의)”로 하고,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예약하는
건부터 적용한다.

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감면율(제6조 관련)

감면대상 \ 대상기간	성수기	비수기	감면기준
1. 구미시민	20%	40%	※일반사용자의 성수기요금을 기준으로 한 감면율임.
2. 구미시승마장 월회원	30%	60%	
3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(1가정 1실에 한함)	—	50%	
4. 장애인(1~3급)	—	50%	
5. 국가보훈대상자	—	50%	
※ 비 고			
—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. — 사용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 — 구미시민, 다자녀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발급 6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 — 구미시승마장월회원 할인은 사용예정일 기준 월회원일 경우에 적용된다. —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. — 장애인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급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1을 따른다. — 국가보훈대상자란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.			